

제4장 예산 이용·전용·이체사용

「지방재정법」 제47조,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2023 회계연도

기간 중에 예산을 이용·전용·이체사용한 것은

1. 예산이용(	0 건)	0 원
(1) 일반회계는	0 건)	0 원
(2)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		
총괄은	0 건)	0 원
2. 예산전용(	4 건)	6,737,175,000 원
(1) 일반회계는	4 건)	6,737,175,000 원
(2)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		
총괄은	0 건)	0 원
3. 예산이체(	85 건)	174,569,653,000 원
(1) 일반회계는	41 건)	171,827,051,000 원
(2)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		
총괄은	44 건)	2,742,602,000 원 이며

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